#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의 규정 중 밑줄을 긋거나 파선으로 둘러 싼 부분을 각각 개정후란의 해당 부분과 같이 하며, 개정전란 및 개정후란에 표시한 표제부에 이중밑줄을 그은 규정(이하 "대상규정"이라 한다)은 그 표제부가 같으면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의 대상규정 과 같이 하고, 그 표제부가 다르면 개정전란의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의 대상규정으로 이동시키며, 개정후란의 대상규정 중 개정전란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것을 신설한다.

# 개정후 제2조(정의) [①、② 생략]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 품(火工品: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2. 생략] 3. 화공품 [가.~자. 생략] <u>차.</u> <u>자동차에어백용 등 인</u> 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카. 생략] [④~⑦ 생략]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생략]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u>자</u> 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u>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u> 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

개정전 제2조(정의) [왼쪽과 같음] ③ [왼쪽과 같음]

[왼쪽과 같음]
3. [왼쪽과 같음]
[왼쪽과 같음]
<u>차.</u>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 발생기

[왼쪽과 같음] [왼쪽과 같음]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왼쪽과 같음]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u>자</u> <u>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u>에 대해서는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하다. [③、④ 생략]

매 · 소지의 금지) ① [생략]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 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 시 체 자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 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 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 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1항 <u>단서 및 제2항 단서</u> 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 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 지허가) ① [생략]

[왼쪽과 같음]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 · 소지의 금지) ① [왼쪽과 같 [제2항을 신설함]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 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M12조(총포 \cdot 도검 \cdot 화약류 \cdot 분 | <math>M12조(총포 \cdot 도검 \cdot 화약류 \cdot 분)$ 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 지허가) ① [왼쪽과 같음]

② 건설공사 · 경비 등을 위하 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 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 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 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 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 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 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 · 가스발사총 · 마취총, 폭발 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 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 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 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 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 로 한정한다. [③~⑤ 생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② 건설공사 · 경비 등을 위하 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 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 총 ·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 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 취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 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 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 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 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 다.

[왼쪽과 같음]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 |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 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자의 결격사유 등) ① [왼쪽과 같음]

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6. 생략]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 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다. 생략] [6의3. 、 7. 생략] [②、③ 생략]

### 제20조(총포、화약류의 폐기)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 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 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 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 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 다.

- ③ [생략]
- ④ [생략]
- ⑤ [생략]

하 이 조에서 같다) 서궁의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왼쪽과 같음]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왼쪽과 같음] [왼쪽과 같음] [왼쪽과 같음]

### 제20조(화약류의 폐기)

[제1항을 신설함]

[제2항을 신설함]

- ① [왼쪽과 같음]
- ② [왼쪽과 같음]
- ③ [왼쪽과 같음]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총포(엽 |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총포(엽 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 이 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제 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 임자를 말한다)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 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이 총포 , 석궁의 소지허가 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 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3. 생략]

- . ② [생략]
-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은 제1항·제4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48조에 따른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u>총포</u>、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 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 아야 한다.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제28 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 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 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이 총포,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 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왼쪽과 같음]

- ② [왼쪽과 같음]
-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은 <u>제1항</u>의 교육에 관한 사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 조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 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u>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u> 정한다) ·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 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

⑤ 총포 · 석궁의 소지허가 또 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 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다.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 를 받은 자: 제16조 또는 제 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 지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5년마다. 다만, 제47조제 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 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 육을 유예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 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 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석궁 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 당 연도에 다시 총포,석궁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교 육을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u>아니하</u>다.

⑤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 <u>정한다)</u> · 석궁의 소지허가 또 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 은 자는 5년마다 제1항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 야 하다.

[제2호를 신설함]

[제2호를 신설함]

[제6항을 신설함]

제35조(도난 · 분실의 <u>신고 등</u>) 제35조(도난 · 분실의 <u>신고</u>) 총포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 、도검、화약류、분사기、전 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 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하기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하기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총포 도난·분실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 · 분실자가 도난 · 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하기가 금지된 기간 동안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있다.

④ 허가관청 또는 지방경찰청 장·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분실 총 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

자충격기 · 석궁을 도난당하거 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 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 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 다. 할 수 있다.

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 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 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 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 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①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출입ㆍ검사 등) [①~③ 제44조(출입ㆍ검사 등) [왼쪽과

생략]

④ 총포의 제조업자 · 판매업자 · 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제조 · 판매 · 임대 또는 수출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이내에 총포의 수량 · 종류 · 제조번호 등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관청에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출입ᆞ검사 등) [왼쪽과 같음] [제4항을 신설함]

제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제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총포、도검、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 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 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 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산업용총 가스발사 총、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 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 를 취소하다.

[1.~4. 생략] [②~⑦ 생략]

<u>제70조(벌칙)</u> ① <u>다음 각 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 고 제조된 총포(권총、소총、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총포、도검、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 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 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 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산업용총 · 가스발사 총 ·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 를 취소한다.

[왼쪽과 같음] [왼쪽과 같음]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 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 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소총、기관총、 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 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 제 3항, 제6조제1항 시2항, 제9 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 벌하다.

고 제조된 총포,도검,화약 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 출시킨 자

2. 제4조제1항 재3항(총포 🔻 화약류만 해당한다), 제6조제 1항(총포、화약류만 해당한다) 、제2항(총포、화약류만 해당 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 조제1항(총포·화약류만 해당 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 발사총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②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4조제1항, 제3항, 제6조제1 항 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제1항제2호에 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한다.

③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 벌하다.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제70조의2를 신설함]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 고 제조된 총포(권총、소총、 기관총、포、엽총、공기총은

제외한다) 、도검 、화약류 、분 사기 · 전자충격기 또는 석궁 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 킨 자 2. 총포(권총、소총、기관총、 포、엽총、공기총은 제외한 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 조제1항 제3항, 제6조제1항 · 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 12조제1항 시 제2항을 위반한 자 3. <u>제12조제3항(총포만 해당</u> 한다)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

제70조의3(상습범) 총포에 관하 [제70조의3을 신설함] 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 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벌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71조(벌칙) [왼쪽과 같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 제3항(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도검,분사 기 · 전자충격기 · 석궁만 해당 한다), 제6조의2제1항 시 제2 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 제1항(도검 · 분사기 · 전자충

1. 제4조제2항 · 제3항(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만 해당한다) · 제2항(도검 · 분사 기 · 전자충격기 · 석궁만 해당 한다), 제6조의2제1항 시 제2 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 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

격기 · 석궁만 해당한다) · 제2 항(분사기 · 전자충격기만 해 당한다) 、제3항(도검、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만 해당한 다)을 위반한 자 [1의2. · 2.~8. 생략]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72조(벌칙) [왼쪽과 같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1의2.</u>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 · 화약류의 제조 방법이 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 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 포한 사람 [2. 、 3. 생략] <u>3의2.</u> 제35조제3항 또는 제6 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 을 위반한 자 [4.~7. 생략]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제1항 · 제2항, 제17조제2항 · 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 37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항 제2항을 위반한 자

격기 · 석궁만 해당한다) · 제2 항(분사기 · 전자충격기만 해 당한다)을 위반한 자

[왼쪽과 같음]

1. [왼쪽과 같음] [제1호의2를 신설함]

[왼쪽과 같음] [제3호의2를 신설함]

[왼쪽과 같음]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73조(벌칙) [왼쪽과 같음]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제1항, 제17조제2항 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 자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 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

- 2. <u>제20조제5항</u>에 따른 기술 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 를 폐기한 자
- 3. [생략]
- 4.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 (총포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신고를 한 자
-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5항, <u>제11조제3항</u>, <u>제20조제3항</u>, 제27조제2항, <u>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u> <u>다)</u>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3. <u>제20조제4항</u> 또는 제39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4. [생략]
  - 5.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u>제44조제3항 · 제4항</u>에

-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 한 사람
- 2. <u>제20조제3항</u>에 따른 기술 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 를 폐기한 자
- 3. [왼쪽과 같음]
- 4. <u>제26조제1항</u>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제74조(과태료) ① [왼쪽과 같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음]

- 1. 제9조제5항, <u>제11조제2항</u>, <u>제20조제1항</u>, 제27조제2항, <u>제35조</u>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를 한 자
- 2. [왼쪽과 같음]
- 3. <u>제20조제2항</u> 또는 제39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4. [왼쪽과 같음]
- 5.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6. [생략] ② [생략]

제75조(형의 병과) 제70조, 제 제75조(형의 병과) 제70조부터 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 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 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 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 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를 한 자 6. [왼쪽과 같음] ② [왼쪽과 같음]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 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 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부터 제73조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 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표 중에서 [ ]안의 표시 및 대상규정의 전체(이중밑줄을 친 표제부를 제외한다)에 친 밑줄은 주석임.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 제3조(도난 · 분실 총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난 · 분실된 총포부터 적용한다.
- 제4조(모의총포 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것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 부터 1개월 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제3조제2항 중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를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모의총포"를 "모의총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단서"를 "단서 및 제2항 단서"로, "모의총포를"을 "모의총포 등을"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분사기"를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로,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분사기"를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고받고"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화약류의 폐기)"를 "(총포·화약류의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를 "총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 항 중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를 "총포"로, "5년마다 제1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제1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5년마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
-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총포·석궁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포 도난 · 분실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분실자가 도난、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수 있다.
- ④ 허가관청 또는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 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 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

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 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총포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제조·판매·임대 또는 수출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총포의 수량·종류·제조번호 등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분사기"를 "마취총, 폭발물 분쇄용 총포, 분사기"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 2.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은 제외한다)·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 2.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 3. 제12조제3항(총포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0조의3(상습범)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 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1조제1호 중 "해당한다)을"을 "해당한다), 제3항(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72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 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 3의2.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 한 자

제73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0조 제3항"을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6조제1항" 을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총포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을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으로, "제35조"를 "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3항 서4항"으로 한다.

제75조 중 "제70조부터 제73조"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로 한다.

제76조 본문 중 "제70조부터 제73조"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

다.

제3조(도난 · 분실 총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도난 · 분실된 총포부터 적용한다.

제4조(모의총포 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것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 부터 1개월 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